「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 수정이유

O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원 구성에 추가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구미시의회 의원 2명 이내'로 신설함.
 - 당 초

제13조 (구성)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 변경

제13조 (구성)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1. 구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3.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 5.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개정안과 같음)
<u>구미시 농업·농촌</u>	<u>구미시 농업·농촌 및</u>	
발전 지원 조례	식품산업 발전 지원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 • 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시의 <u>농업·농촌</u> 이	<u>농업·농촌 및 식품</u>	
나아갈 방향에 관한	<u>산업</u>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정의) ———	(개정안과 같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 이란 <u>「농어</u>	1. ——_ <u>「농업·농</u>	(개정안과 같음)
<u>업ㆍ농어촌 및 식품산</u>	<u>촌 및 식품산업 기본</u>	
업 기본법」 제3조제1	법」 제3조제1호	
호에 따른 산업을 말		
한다.		

- 2. "농업인"이란 「농 2. "농업인"이란 「농 (개정안과 같음) 어업 • 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제3 조제2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 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호에 따른 농업경 영체를 말한다.
-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하다.
- 5. "농촌"이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따른 지역을 말한 다.
- 6. "농산물"이란

- 업ㆍ농촌 및 식품산 <u>업 기본법」제</u>3조제 2호에 따른 사람을 <u>말한다.</u>
- 3.---- 「농 (개정안과 같음) 업·농촌 및 식품 <u>산업</u> 기본법」제3 기본법」제3조제3 조제3호-----
- 4. "생산자단체" | 4.---- <u>「농</u> (개정안과 같음) 란 「농어업・농 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제3 조제4호-----
 - 5. ----- 「농업 (개정안과 같음) ・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제3조 법」제3조제5호에 제5호-----
- <u>6. "농수산물"이</u> (개정안과 같음) 「농어업・농어촌 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및 식품산업 기본

법」제3조제6호에	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	따른 산물을 말한	
<u>다.</u>	<u>다.</u>	
7. "식품"이란	7 <u>「농업</u>	(개정안과 같음)
「농어업・농어촌	• 농촌 및 식품산	
및 식품산업 기본	업 기본법」제3조	
법」제3조제7호에	<u>제7호</u>	
규정된 것을 말한		
다.		
8. "식품산업"이	8	(개정안과 같음)
란 「농어업・농	업·농촌 및 식품	
어촌 및 식품산업	산업 기본법」제3	
기본법」제3조제8	조제8호	
<u>호</u>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4조(농업관련 주체	제4조 <u>(농업관련 주체</u>	(개정안과 같음)
<u>간 협력)</u> (생 략)	<u>간 협력)</u> (현행과	
	같음)	
제7조(소득증대와 복	제7조(소득증대와 복	(개정안과 같음)
지증진) 시장은 <u>대</u>	지증진) <u>대내</u>	
<u>내·외적</u> 으로 경쟁	외적	
력 있는 품목개발과		
농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ı	ı

여야 한다.		
제10조(자발적 참여	제10조(자발적 참여	(개정안과 같음)
유도) ① (생 략)	유도)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②	(개정안과 같음)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		
최하고, 제11조 규		
정에 의한 구미시	<u>농업·농촌및</u>	
<u>농업·농촌 발전협</u>	<u>식품산업정책심의</u>	
<u>의회</u> , 시 홈페이지	<u> </u>	
등 다양한 참여 경		
로를 보장하여야 한	 .	
다.		
제11조 <u>(농업·농촌 발</u>	제11조 <u>(농업·농촌및</u>	(개정안과 같음)
전협의회 설치) 시	<u>식품산업정책심의</u>	
의 농업발전전략 수	<u>회 설치)</u>	
립 지원 및 농정업		
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u>농업</u>	<u>농</u> 업·농촌	
• 농촌 발전협의회	<u> 및식품산업정책심</u>	
<u>(이하 "협의회"</u> 라	의회 (이하 "심의	
한다)를 둔다.	<u>회"</u>	
제12조 (기능) <u>협의회</u>	제12조 (기능) <u>심의회</u>	(개정안과 같음)
<u>는 다음 각호</u> 의 사	<u>는 다음 각 호</u>	
I	I	I

항을 심의 조정한 다. 1. ~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	 1. ~ 4. (현행과 같음) 5 심의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여 <u>부의하는</u> 사항 제13조 (구성) <u>①협의</u>	에 부치는 제13조 (구성) <u>① 심</u>	(개정안과 같음)
최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 원의 과반수가 되어	의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의 선 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되고, 부위원장 중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개정안과 같음)
③당연직위원은 시 의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식 품산업과장, 축산과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안과 같음)

- 장, 산림과장, 농촌 지원과장, 기술개발 과장으로 하며 위촉 직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 의원
- <u>2.시에 주소를 둔</u> <u>2. 생산자단체, 농</u> <u>2</u>. ~ <u>5</u>. (개정안 제1 농업인, 소비자단 체의 임원
- 3.농업과 관련된 품 목별 생산자단체 의 임원, 선도농 업인

- 1. 관계 행정기관의 1. 구미시의회 의원 장 3명 이내
- 업인단체, 소비자 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 명 이내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 ·회사법인·조합 학·연구소·국제 기구에서 조교수 • 연구원 이상으 로 재직하고 있거 나 재직하였던 사 람 및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 행정기관 · 사업체 등에서 5 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

- <u> 2명</u> 이내
- 호부터 제4호까지 와 같음)

	<u>던 사람 6명 이내</u>	
4. 농업 · 지역개발	4.지역농업 및 식품	
분야 전문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	
	품산업 종사자 대	
	표 13명 이내	
5. 농산물의 가공ㆍ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유통・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④ <u>공무원이 아닌</u> 위	④ <u>제3항에 따른</u>	(개정안과 같음)
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		
원으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		
다.		
<u><신 설></u>	제14조 (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시장은 제13조제3항	
	에 따른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	

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 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 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협의회 위원 제15조 (심의회 위원 (개정안과 같음) 장의 직무) ①위원 장의 직무) ① ----- 심의회를 대표하 며 심의회----------. ②부위원장은 위원 ② ----- (개정안과 같음) 수 없을 때는 그 직 ----- 대행하고, 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장은 협의회를 대표 하며 협의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장을 보좌하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u>제15조</u> (회의) ①위원 장은 <u>협의회를 소집</u> <u>하고</u> 그 의장이 된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정안과 같음)
다. ② <u>협의회</u> 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 하여야 하며,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	 ② 심의회 	(개정안과 같음)
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u>소집</u>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개정안과 간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미국화</u> 개의(開議)하 고,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는 <u>회의일시</u> , 장소	④ 회 회 의개최 일시 회의	(개정안과 같음)

및 <u>부의사항</u> 을 정하	<u>에 부치는 사항</u>	
여 회의 개최일 <u>3일</u>	<u>3일 전</u>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	(개정안과 같음)
	음)	
<u>제16조</u> (간사) ①위원	<u>제17조</u> (간사) ①	(개정안과 같음)
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u>협의회</u> 에	<u>심의회</u>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u>농정기획</u>	② <u>농업정책과</u>	(개정안과 같음)
<u>담당</u> 이 된다.	<u> 장</u> .	
<u>제17조</u> (분과위원회)	제18조(분과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①협의회의 활동을	① 심의회의 활동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 <u>각</u>	<u>각 호</u>	
<u>호</u> 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u>협의</u>	<u>심의회의 의결</u>	
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		
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개정안과 같음)
	같음)	
②분과위원회의 구	②	(개정안과 같음)
성・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u>심의회</u>	
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u>제18조</u> (수당 및 여비)	<u>제19조</u> (수당 및 여비)	(개정안과 같음)
협의회에 출석한 위	<u>심의회</u>	
원에 대하여 <u>「구미</u>		
시 각종 위원회 실	시 각종 위원회 구	
<u>비변상 조례</u> 」가 정	성 및 운영에 관한	
하는 바에 따라 수	조례	
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u>제19조</u> (준용) 이 조례	<u>제20조</u> (준용)	(개정안과 같음)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u>「구미시 지</u>	- <u>「구미시 지방보</u>	
방보조금 관리 조	조금 관리 조례」를	
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